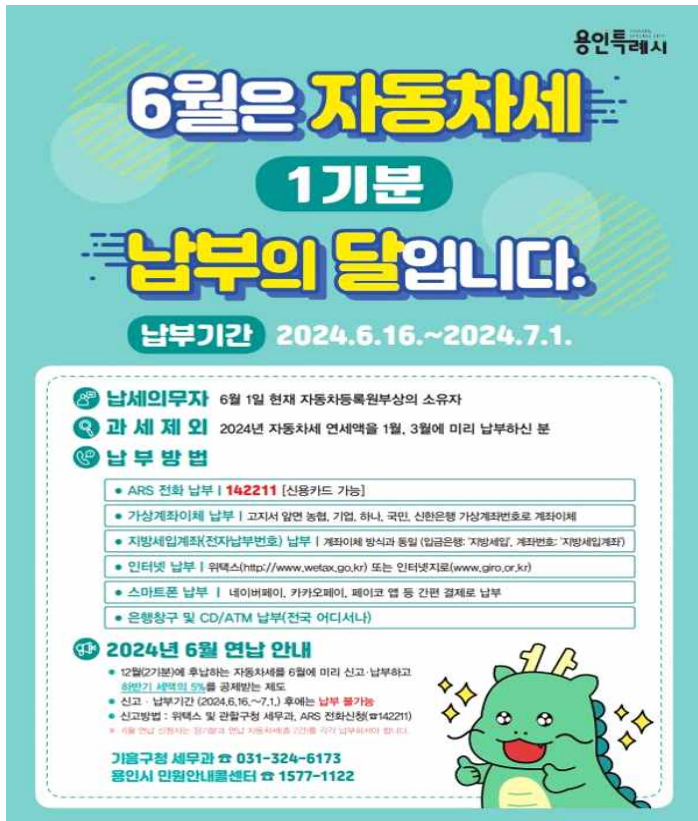


## 자동차세(1기분) 납부 안내



**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.**  
납부기간 2024.6.16.~2024.7.1.

**납세의무자**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
**과세제외**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, 3월에 미리 납부하신 분  
**납부방법**

- ARS 전화 납부 | 142211 [신용카드 가능]
- 가상계좌이체 납부 | 고지서 앞면 동원, 기입, 해나, 국민,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
- 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 납부 |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 (입금은행: 지방세입, 계좌번호: 지방세입계좌)
- 인터넷 납부 |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 또는 인터넷지료(www.giro.or.kr)
- 스마트폰 납부 | 내이비페이, 카카오페이, 페이코 앱 등 간편 결제로 납부
- 은행창구 및 CD/ATM 납부(전국 어디서나)

**2024년 6월 연납 안내**

- 12월(2기분)에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·납부하고 8만기 세액의 5%를 공제하는 제도
- 신고·납부기간 (2024.6.16.~7.1.) 후에는 납부 불가능
- 신고방법: 위택스 및 관할구청 세무과, ARS 전화신청 ☎142211
- \* 해당 연도 연납은 연세액 5% 감면 혜택을 2년간 누릴 수 있습니다.

기밀구청 세무과 ☎ 031-324-6173  
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☎ 1577-1122

## 용인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안내

- 신청기간 : 2024. 6. 10. ~ 6. 28.
- 지원대상 : 용인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
- 여성 1인 가구 / 한부모 모자가정(동거자녀 18세 미만) / 여성대상범죄 피해여성(2024. 6. 3.기준 거주자)
- 지원내용 : 여성 1인가구 등에 여성안심 패키지 (창문잠금장치, 문열림센서 등) 보급
- 신청방법 : 용인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
(※ 결과는 7월 중 개별 문자 발송 예정)
- 문의처 : 용인시 여성가족과 ☎031-324-2662

## 용인소방서 분서에 따른 안내

2024년 6월 3일부터 「용인소방서」가 「용인소방서」와 「용인서부소방서」로 분리됩니다.

### <용인서부소방서>

- 관할지역 : 용인시 기흥구 및 수지구
- 민원실 : 수지119안전센터 별관(수지구 풍덕천로 177)  
(※업무: 자체점검, 건축(착완공,동의),완비/방염,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등)

### <용인소방서>

- 관할지역 : 용인시 처인구
- 민원실 : 용인소방서 별관(처인구 명지로 45)  
(※업무: 건축(착완공,동의), 완비/방염,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등)

##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개최 안내

- 기간 : 2024. 6. 27.(목) ~ 7. 23.(화)  
[※ 시민연극제 : 8. 31(토) ~ 9. 9(월)]
- 장소 : 용인포은아트홀, 용인문예회관, 용인문화예술원, 평생학습관 등
- 내용
  - 16개 광역 시·도 지역대표극단 연극 공연
  - 용인르네상스광장축제, 해외 초청공연, 네트워킹 페스티벌, 학술세미나 등
  - 대한민국 대학 및 시민연극제
- 티켓예매처 : 인터파크티켓(경기도 및 용인시민 50% 할인)
- 문의처 : 대한민국연극제 사무국 ☎ 031-323-6654

##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협조 안내



**주방용 오물분쇄기**  
올바로 사용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

**주방용 오물분쇄기란?** 「하수도법」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.

**제품구매 시 확인할 사항**

구매 전	구매 후
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	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</li> <li>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</li> <li>A/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</li> </ul> <small>※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(portal.kiwatec.or.kr)에서 제품 외형 확인 가능</smal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증제품 구입 후 <b>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·변조 불가</b></li> <li><b>마성을 역상 발효 방식의 경우 마성을 관리</b></li> </ul> <small>※ 아래 불법제품 형태 참조</small>

**이런 제품은 모두 불법입니다!** **불법개·변조 여부 확인하세요!**

- 본사에서 회수통을 통과하여 배관상시
- 회수통 제거
-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
- 내부 거름망 훼손

**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.**

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불법제품 제조·수입·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